

■ 핵심진단평가 정오표(2021.1)

페이지	줄수 및 문항번호	정·오	내 용
2	아래에서 첫재줄 19번 문제	오	19. 측정길이 12미터 미만인 기선과 범선이 총톤수를 측정할 때는 일반배치도만 첨부하면 된다..... ()
		정	19. 한국선박은 선수 양현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()
3	아래에서 첫재줄 19번 문제	오	(O)
		정	(X) 선미 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10센티미터 이상의 한글로 선적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
13	29번 표 내용	오	• 선내 관람과 관련하여 승선하는 사람, 하역·수리작업·해상공사 등을 위한 작업원 또는 선원 교대자 등으로서 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만 승선하는 자
		정	•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, 하역·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,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
60	1번 마.	오	마.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▶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.
		정	마. 해양환경(해양폐기물)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▶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.
	3번 4번 9번	오	해양수산부장관
		정	관리청
61	1번 마.	오	마. 해양환경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▶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.
		정	마. 해양환경(해양폐기물)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소유한 선박 ▶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한다.
	3번 4번 9번	오	해양수산부장관
		정	관리청
62	4번	오	해양수산부장관
		정	관리청

87	24번	오	24. 해양환경관리업 중 해양수산부장관에 등록하는 것으로는 (폐기물해양배출업) (폐기물해양수거업) (퇴적오염물질수거업) 있으며,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(해양오염방제업) (유창청소업)이 있다.
		정	24.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상 해양환경관리업인 해양오염방제업, 유창청소업은 (해양경찰청장)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,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인 폐기물해양배출업, 해양폐기물수거업,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은 (해양수산부장관)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. ▶2020. 12. 4. 개정시행
88	31번 보기①	오	①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 및 접속수역
		정	① 배타적경제수역 밖에서 한국선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.
89	31번	오	▶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 및 내수
		정	한국선박은 모든 해역에 적용된다.
94	49번	오	49.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?
		정	49. 다음 중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상 해양폐기물배출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?
95	49번	오	49. 정답 ④ 1. 폐기물해양배출업 2. 해양오염방제업 3. 유창청소업 4. 폐기물해양수거업 5. 퇴적오염물질수거업
		정	49. 정답 ④ ■ 해양환경관리업(2가지) ➡ 「해양환경관리법」 ▶ 2020. 12. 4. 시행 • 해양오염방제업 ▶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 • 유창청소업 ▶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 ■ 해양폐기물관리업(3가지) ➡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• 폐기물 해양배출업 ▶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• 해양폐기물 수거업 ▶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 •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 ▶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

97

표

오	표 수정																					
정	■ 해양환경관리업(2가지) ▶ 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 따른 ▶ 2020. 12. 4. 시행 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 류</th><th>등 록</th></tr><tr><td>• 해양오염방제업</td><td>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</td><td>▶ 해양경찰청장</td></tr><tr><td>• 유창청소업</td><td>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</td><td>▶ 해양경찰청장</td></tr></table> ■ 해양폐기물관리업(3가지) ▶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에 따른 ▶ 2020. 12. 4. 시행 <table><tr><th colspan="2">종 류</th><th>등 록</th></tr><tr><td>• 폐기물 해양배출업</td><td>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</td><td>▶ 해양수산부장관</td></tr><tr><td>• 해양폐기물 수거업</td><td>부유폐기물·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</td><td>▶ 해양수산부장관</td></tr><tr><td>•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</td><td>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</td><td>▶ 해양수산부장관</td></tr></table>	종 류		등 록	• 해양오염방제업	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	▶ 해양경찰청장	• 유창청소업	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	▶ 해양경찰청장	종 류		등 록	• 폐기물 해양배출업	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	▶ 해양수산부장관	• 해양폐기물 수거업	부유폐기물·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	▶ 해양수산부장관	•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	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	▶ 해양수산부장관
	종 류		등 록																			
• 해양오염방제업	오염물질의 방제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을 방제하는 사업	▶ 해양경찰청장																				
• 유창청소업	선박의 유창을 청소하거나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그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사업	▶ 해양경찰청장																				
종 류		등 록																				
• 폐기물 해양배출업	폐기물의 해양배출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	▶ 해양수산부장관																				
• 해양폐기물 수거업	부유폐기물·침적폐기물의 수거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	▶ 해양수산부장관																				
•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	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필요한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을 갖추고 해양오염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	▶ 해양수산부장관																				

111	4번	오	4.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(모집 14일 전)까지 (관할 해양경찰서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		정	4. 연안체험활동에 참가하려는 자를 모집하여 연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를 (연안체험활동 참가자 모집 7일 전)까지 (관할 해양경찰서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▶ 14일에서 7일로 개정됨 2020.12.23. <시행규칙 제7조>
156	11번 추가	오	문제추가
		정	11.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()에 해야 하며, 위치통지의 횟수는 1.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() 2.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() 3.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()
157	6번 추가	오	추가
		정	■ 적용제외 (어업지도선) (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)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 ▶ “어업지도선,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”이란 <시행령 제3조> 1. 수산업에 관한 시험·조사·지도·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.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.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.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
157	11.추가	오	추가
		정	11.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(어선안전조업본부)에 해야 하며, 위치통지의 횟수는 1.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(1일 3회) 2.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(1일 2회) 3.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(1일 1회)

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(제4조제1항 관련) [별표 1]

어선의 출항제한의 기준,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

구분	출항제한	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
1. 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풍랑경보	모든 어선 출항 금지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안전해역으로의 이동 및 항·만으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
2. 풍랑주의보	총톤수 15톤(태풍으로 인한 풍랑주의보 발효시에는 30톤) 미만 어선 출항 금지	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3. 폭풍해일주의보 폭풍해일경보	-	가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, 해양경찰관서 함정의 항내 정박선 안전지대로의 대피 명령을 준수할 것 나.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(「어선법」에 따른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으로 한정한다)은 무선설비를 상시 켜고 경보를 청취할 것

■ 출어등록 <법 제12조>

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■ 출어등록의 유효기간 <시행령 제7조>

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**등록일부터 1년**으로 한다.

■ 서해 접경해역의 통제 <법 제17조>

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신고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**통제할 수 있다.**

■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<시행령 제9조>

1. 백령도 2. 대청도 3. 소청도 4. 연평도 5. 강화도

■ 선장의 의무 <법 제22조>

① 어선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여야 한다.

▶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 청취 <시행규칙 제11조>

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**매시 정각부터 3분 이상 무선설비를 통해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**해야 한다.

②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박 또는 안전본부로부터 위험상황을 전파받거나 대피하도록 통보를 받은 경우에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,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은 대피상황을 지체 없이 **안전본부에 통보**하여야 한다.

1.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
2. 해양경찰관서 함정
3. 해군함정

159	158 다음 페이지에 159 페이지로 추가	정	■ 정선 등 <법 제23조> 해양수산부장관, 국방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어선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·승선조사 등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. ▶ 정선신호 방법 등 <시행규칙 제12조> ① 정선명령을 위한 정선신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. 1. 주간 : 노란색과 검은색 표지를 교차하여 연결한 정선명령신호기를 게양하는 방법 또는 통신·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2. 야간 : 기적을 짧게 한 번, 길게 한 번 연이어 울리거나 빛을 짧게 한 번, 길게 한 번 연이어 비추는 방법 또는 통신·방송을 이용하거나 육성으로 명령하는 방법 ② 승선조사를 할 때에는 승선조사를 받는 어선의 선장에게 조사자의 소속 및 성명, 승선조사의 목적 및 이유를 알려야 한다. ▶ 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<시행령 제12조>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. 1.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: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. 제1호 외의 경우 :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. 이 경우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. 1.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1일 3회(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, 두 번째 및 세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) 2.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1일 2회(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, 두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) 3.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: 1일 1회(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야 한다)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.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,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. 1. 풍랑특보 발효시 : 매 12시간 간격(12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) 2. 태풍특보 발효시 : 매 4시간 간격(4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166	7번 8번	오	해양수산부장관
		정	관리청
167	2번	오	2. <u>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</u> 는 사업의 종류별로 (해양수산부장관)에게 (등록)하여야 한다.
		정	2. <u>항만운송사업을 하려는 자</u> 는 사업의 종류별로 (관리청)에게 (등록)하여야 한다.
	3번	오	3.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운임과 요금을 정하였을 때는 (해양수산부장관)의 (인가)를 받아야 한다.
		정	3.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 운임과 요금을 정하였을 때는 (관리청)의 (인가)를 받아야
	6번	오	6. <u>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</u> 는 항만별·업종별로 (해양수산부장관)에게 (등록)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</u> 는 (신고)를 하여야 한다.
		정	6. <u>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</u> 는 항만별·업종별로 (관리청)에게 (등록)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물품공급업을 하려는 자</u> 는 (신고)를 하여야 한다.
	7번	오	7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<u>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</u> 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<u>컨테이너 화물</u> 에 대하여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(신고)하여야 한다.
		정	7.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<u>항만시설에서 하역하는 화물</u> 또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에서 취급하는 <u>컨테이너 화물</u> 에 대하여는 그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관리청에게 (신고)하여야 한다.
	8번	오	8.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(1)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(6개월)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		정	8.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사업 수행 실적이 (1)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(6개월)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
		오	
		정	